

#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4.12.31 조례 제2259호

(일부개정) 2018.04.09 조례 제2508호

(일부개정) 2018.09.20 조례 제2520호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9.10.21 조례 제2600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0.12.21 조례 제2690호 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2.07.08 조례 제2787호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  
례」 제18조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서비스 제공, 사회서  
비스 확충 등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천군 지역순환경  
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순환경제"란 지역경제의 생산 활동으로 창출될 부가가치의  
분배가 지역 내 투자 및 소비지출로 이어져 소득, 고용, 삶의 질  
향상이 선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간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그 밖에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지역일자리 활성화사업"이란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서비스 제공과 지역인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 소득사업을 추구해나갈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 지속가능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명칭 및 설치) ① 센터의 명칭은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천군 지역 내에 설치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2.7.8.>

1. 센터 운영·사업계획 수립·집행·평가·보고
2. 지역일자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발굴·육성 지원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육성 지원
4.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정보 제공, 취업상담 및 취업교육·훈련

5. 지역인재 발굴·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사업(주민교육·훈련 등) 전반
6.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한 각종 지역자원 발굴·조사·연구, 교육, 홍보사업
7. 지역순환경제(지역일자리 창출 등) 관련 정책개발과 연구 및 포럼사업
8.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의 복지시책 연계사업
9. 지역순환경제(지역일자리 등)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선진지역과 교류·협력사업
10. 사회적경제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1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의 개발 및 시행
12.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육성·지원
13.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일자리 관련행사 및 홍보활동 지원
14. 지역순환경제 진흥을 위하여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위탁받은 사업(정부지원일자리, 자체공모사업 등)
15.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순환경제(지역일자리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군수는 센터가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조직) ① 센터에는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직책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군수가 선임하며, 제7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선임한다.<개정 2018.4.9.>

③ 센터장은 비상근·무보수·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센터의 사무를 총괄하며, 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대외활동 등의 역할을 한다.<개정 2018.4.9.>

⑤ 센터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고용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 및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운영 실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9.20.>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4.9.>

1. 수탁 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수탁 조건과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4. 삭제<2020.12.21.>
5. 수탁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언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사업추진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

련서류를 조사하고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센터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59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천군 재단법인 지역경제순환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는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2508호, 2018.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520호, 2018. 9. 20.>(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6) 생략

(17)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18)~(36) 생략

부 칙(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